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Official Family-related Service History Archives in Korea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김경아**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박미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지원본부

본부장 강복정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영호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최새은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강사 전지원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강사 김미영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Kim, Kyoung A

Dep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Park, Mee Sok

HQ for Regional Centers,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Director Kang, Bog Jeong

The Seoul Metropolitan Single Parent's Family Support Center

CEO Lee, Young-h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Choi, Saeun

Dep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Lecturer Chun, JeeWon

Dep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Lecturer Kim, Mi Young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본 논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9)에 제출한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주저자: 김경아(kakim@sookmyung.ac.kr)

*** 교신저자: 박미석(msp@sookmyung.ac.kr)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resourc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archives on the official family service history in Korea. The study collected records of family policies and official family service from 1948 to 2019 and thereafter attempted to classify the official family service. In addition, experts were consulted to diagnose compliance with research contents and directions, investigate priorities of the family policies, and provide opinions on the elements of each process of archiv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five areas of concern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archive of official family services: concept, scope, collection, arrangemen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Second, the findings suggest which processes are critical to developing a sustainable and systematic archive system for the official family service history. The construction of the archives will provide a platform for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integrated family policies and inform the direction of future family policies in Korea. In addition, these archives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building a solid Korean national identity.

Key Words : 공적 가족사업(Official Family Service), 가족정책(Family Policy), 아카이브(Archives)

I. 서론

가족은 문화, 경제, 기술 등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향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개념인 가족의 유형, 기능, 가치관 등에 대해 전통적인 정형성보다는 다양성 고려가 주요한 방향성이 되었고, 이러한 가족 특성의 다양성은 보편성과 함께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적인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가족에 대해 과거에는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요보호 대상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복지정책이 제공되었지만 현재는 보편성과 포괄성을 전제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가족정책 확대 요구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작아지면서 발생한 기능적인 변화와 돌봄과 같은 다양한 요구가 가족을 강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이진숙, 2017). 이와 같이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가족의 역동

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학문 분야인 가정학은 시간에 따른 사회적 상황을 수용하며 그 모습을 변모시켜왔는데, 특히 국제적으로 1960년대부터 가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정학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인간에 인접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특성 사이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이정우 외, 1997; 장명옥, 1982). 이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응용학문의 성격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정경영학, 가족학, 아동학, 가족아동복지학, 소비자학, 아동소비자학, 의류학, 식품영양학, 주거학 등 다양한 세부 학문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가정경영학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개인가정 및 공공가정(이기영·문숙재·송혜림, 1996)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데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활설계, 취업노동, 일·가정양립, 건강가정, 공공가정, 가정복지사, 가족기업 등 다양한 연구주제들을 통해 가정경영학의 사명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진일보한 학문적 고도화

와 사회적 기여를 위해 가정경영학 연구의 성과들이 단지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환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면서(정영금, 2017) 정책과 연계된 연구주제가 꾸준히 다루어져 왔다. 즉 가정경영학의 관점에서 가족의 변화는 국가의 정책적 대응 안에서 이해될 수 있고 그러한 정책은 가족의 자원이자 환경으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개입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정책이 갖는 영향력 때문에 가족의 변화와 전망을 이해하기 위한 틀로 가족정책이 활용되기도 하였다(윤홍식 외, 2011). 따라서 가정경영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들을 거시적 측면에서 정책과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은 실천적이며 환경 상호적인 학문 본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은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국가가 갖는 가족정책에 대한 관점이나 범위가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산물로서(김혜경 외, 2014),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정책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 1950년~1960년대 부녀복지 차원의 과부·고아 중심 사업,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 1980년대 인구정책, 1990년대 요보호가족 중심의 사회적 서비스, 2000년대 취업여성가구를 위한 모성보호조치, 현재의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등은 우리나라 가족관련 정책의 주요 흐름으로서(관계부처합동, 2020; 이진숙·안은숙, 2006), 이러한 정책들은 시대별 가족의 요구와 정치적 협상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은 가족 개념이 갖는 모든 사회적 관계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특성(유범상, 2012)이나 가족의 급속한 변화와 요구에의 대응이라는 현안성 때문에 역사적 과정을 수집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공식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책과 관련하여 발전적인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역사적 기록의 수집과 관리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며(백영주·김수자, 2005), 양애경(2012)은 이러한 행위를 정책 아카이브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정책 과정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분석과 기록을 담은 정책 아카이브가 정책 발전의 실질적인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카이브는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연결하는 교량의 의미뿐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한 정체성 구현, 다양한 연구·교육에의 활용과 같은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윤영·안병현, 2012). 이러한 아카이브의 효용성에 주목하고 여성, 지역, 역사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카이브 방식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여성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성평등, 인권이라는 주제와 결합하여 전시물, 역사적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시기의 여성 노동자들의 가족, 노동 등과 같은 삶의 내용이나 여성운동 과정을 고찰하면서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사적, 정보적 가치를 강조해왔다(이혜린·박주석, 2020; De Haan, 2004). 지역 분야에서는 강원, 대구, 대전, 부산 등의 지역이 갖는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기록을 아카이빙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김화경, 2012; 정지연, 2019; 최장락·이상희, 2013). 그러나 가족정책 분야에서는 가족정책의 광범위한 특성 및 다른 사회복지 정책들과의 중첩성 등으로 인해 가족정책과 관련된 과거부터의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작업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역사적으로 가족정책은 관점의 변화, 서비스 확대와 같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발전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을 유추하고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카이브(이혜린·박주석, 2020)의 효용성을 가족사업의 발로가 되는 가족정책에 적용해 봄으로써 미래 가정경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가족사업 아카이브 구축에 앞서 우선적으로 가족정책의 개념을 지금까지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되었던 법령에 의거한 공적 가족사업으로 한정하고 이의 주요 내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가족사업의 역사를 접근해 가는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가족정책과 가족사업이 비중 있게 발현된다는 점에 기반하여 1948년 헌법 제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확장된 스펙트럼 안에서 해당 기간 동안 가족과 관련한 일련의 법(령)들과 가족사업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정책의 광범위한 속성과 아카이브 차원에서 방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기록을 수집할 때 활용될 수 있는 특정 영역의 수집이나 기록화 범주와 대상에 대한 사전분석 등과 같은(김유승·류반디, 2015; 설문원, 2010) 전략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의 가족정책 개념과 방법을 정리하였다. 이와 유사한 전략을 취한 백영주와 김수자(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사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을 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과 관련하여 취하는 행정적 조치나 방침으로 정의한 후 여성정책의 역사적 과정을 고찰한 바 있다. 또한 이미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을 특화한 성평등아카이브(2020)나 지역을 특화한 강원아카이브(2020) 등 디지털화되어 독자들과 쉽게 호흡하는 아카이브 구축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가정학의 사회적 산물인 공적가족사업을 오프라인, 온라인상에서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법(령)에 근거하여 가족사업 아카이브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집적(集積)된 가족사업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가족사업의 통합적 분류를 통한 우리나라 주요 가족사업을 범주별로 아젠다화함으로써 향후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실천학문인 가정경영학의 성과를

를 외현적(外現的)으로 확대하여 정책 방향에 환류할 수 있는 하나의 학문적 성과창출의 대안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우리나라의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절차별로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우리나라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의 범주화 유형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아카이브

공적 가족사업을 아카이브와 연계한 최초의 논의는 점에서 우선 아카이브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카이브(archives 또는 archival records)란 어떤 개인이나 조직, 정부 기관 및 공공 단체의 업무나 행위 과정에서 생산된 특정 사실을 저장하고 있는 기록 중 평가과정을 통해 역사적·정보적 가치를 인정받아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기록을 의미한다(서은경·박희진, 2019; 최정태·이애란·이영숙, 2006). 그리스어 ArcheIn(Arkheion)에서 유래된 아카이브는 ‘통치하다’, ‘명령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리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라틴어 Archivum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 형태의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와 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이희재, 2004). 국제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에서는 아카이브를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존재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생산, 입수한 기록으로서, 생산·입수된 직접적인 목적 이상으로 지속적 가치가 있거나 생산자의 기능이나 책임을 입증해주는 데 있어 의미를 지닌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19). 즉, 아카이브는 근본적으로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

서, 비도서형태의 기록물 자체를 뜻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수집·관리하며 보존하는 시설(building or institution) 또는 기관(agency)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최정태 외, 2006; Pearce-moses, 2005). 이러한 아카이브의 개념이나 방법은 변화하는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식사회 속에서 기록이 지식 창출의 핵심자원으로 평가받고 난 이후 그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천호준·김주학, 2008; Iacovino, 2010).

아카이브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진본성(authenticity), 신뢰성(reliability), 무결성(integrity), 이용가능성(usability)의 특징을 지녀야 한다(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19). 보존기록물로서 아카이브는 기록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더 이상 업무의 추진이나 진행에 필요하지 않는 보존기록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숙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둘째, 행정적이고 학문적인 목적들에 따른 지속적인 가치, 즉, 선별 작업에서 기록 관리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기록물로 분류되기에 충분해야 한다. 셋째, 관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역사기록물로서 평가받아야 한다(김정하, 2007).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는 자료들은 아카이브를 통해 관리·보존되며,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공공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아카이브는 업무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적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과거를 증명해주는 증거적 가치를 발휘하며 학문적 발전의 지적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에는 아카이브의 목표 및 비전을 설정하고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아카이브 구축의 첫 단계인 수집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수집정책은 아카이브의 목적에 따라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과 어떠한 유형의 기록을 수집할 것인지를 성문화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아카이브의 방향을 체계화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수집활동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신동희·김유승, 2016). 그리고 수집

정책에 의거하여 선별된 기록물을 정리하고 서술하여 보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Miller, 1990).

가족정책 분야에서의 최초의 아카이브 접근이라는 점에서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요소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자료의 방대함과 예비조사라는 상황에 적용되었던 도큐멘이션 전략의 주요 개념을 활용하였다. 도큐멘테이션의 의미는 기록학 영역에서 기록 자체로 해석되고 있으며, 행위로서의 도큐멘테이션은 개인이나 조직, 사회활동 사건 등의 전체 내용과 변화과정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작업을 지칭한다(설문원, 2010).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한 선행연구(김유승·류반디, 2015; 김익한·권소현, 2010; 오정희·정연경, 2015)들은 대통령기록물 수집 등과 같은 특정 주제와 특정 사건 및 지역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징은 협력수집, 특정 영역의 수집, 결탁 기록의 생산, 기록화 계획, 자문조직 등으로 규정된다(한국기록학회, 2008). 이러한 과정적 요소들을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분야별 연구자 참여, 공적 가족사업이라는 특정 영역의 자료 수집과 연혁별 정리, 자문조직 구성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아카이브의 개념과 방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 가족사업 아카이브를 ‘우리나라 공적 가족사업에 대한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기록물의 집합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공적 가족사업의 역사

본 연구에서 한정된 가족사업은 가족정책의 거시적 단위인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제도와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 공적(official)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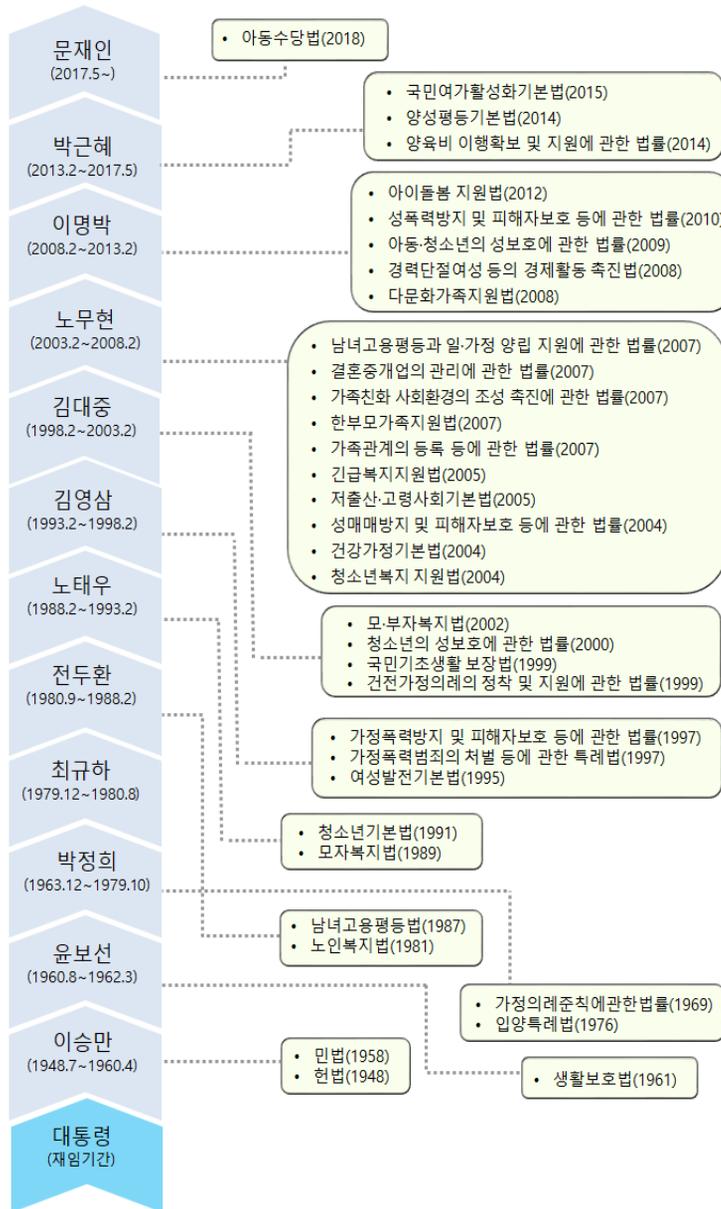
를 더하여 명명한 공적 가족사업이란 가족을 대상으로 또는 가족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제도와 프로그램 중 공공기관인 중앙정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에 기반해 볼 때, 공적 가족사업 역사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점 동안 제정된 가족관련 핵심 법령의 변화과정 및 정부별 국정과제의 내용을 토대로 파악되는 가족사업의 연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족관련 핵심 법령을 토대로 공적 가족사업에 대한 시대적 변화 추이를 추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족사업의 발현과 확장은 거시적으로 볼 때, 가족사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 근본적으로 기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나 정책의 연혁별 정리는 이론 연구 차원에서 수행되어 왔다(김유승·류반디, 2015; 백영주·김수자, 2005).

우리나라 모든 법의 근간은 1948년 제정된 「헌법」에 근거를 둔다. 그 내용 중 가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가족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한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등은 공적 가족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법」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가족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가족사업 기관과의 연계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법령의 제정과 시행은 사회, 국가적 시의성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통해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정부별로 가족사업 및 제도의 근간이 된 법(령) 제정의 연혁을 추출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좀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이상의 법(령)의 제정은 곧 집권 정부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각 정권별

국정과제(presidential agenda)로 가시화되었다. 부연하면, 국정과제란 특정 정부가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국가 전체적 차원으로 필요한 중요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킨 정책과 사업을 의미한다(방민석, 2016). 즉 공시된 국정과제는 시대적 가족사업의 발현과 추진 성과를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만큼, 실무차원에서 국정과제의 단초가 된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공적 가족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3년 국내의 급속한 전환기 속에서 출범한 김영삼 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혁’을 포함한 ‘신한국 건설’을 비전으로 20여년 만에 들어선 민선 민간정부이다(대통령비서실, 1998). 1995년 당시 대안가정학회는 가정학계가 정부가 내세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가정복지사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조희금 외, 2014)한 바 있다. 1995년에는 저소득모부자가정에 생업기반조성을 위한 장기저리 복지자금 대출사업을 실시(여성가족부, 2019d)하는 등 한부모가족지원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997년에는 「국적법」을 개정하여 법률상으로 가족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조항을 포함시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에 국가의 역할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6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가정폭력방지법 입법 청원 등이 구체화되면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로써 가정폭력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박복순, 2018).

다음 금융위기 속에서 출발한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이라는 비전속에서, 출산율의 감소와 이혼율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그림 1〉 정부별 가족사업 관련 법률 제·개정 연혁

지원정책 추진과 법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촉구된 시기였다. 1998년 결혼중개업이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국제결혼이 대중화되는 촉진제 역할을 했으며, 2002년에는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어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과 다문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부의 출범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최초로 여성정책 종합계획인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이

수립되었다. 이에 다양한 여성·가정복지서비스 확충이라는 전략 안에 여성 및 가정 폭력 근절이라는 정책 과제가 포함됨으로써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김영옥 외, 2006).

한편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 시기에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필두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제도적 기반 확충이 이루어져 피해자 관점의 다양한 지원서비스 확대, 여성긴급전화 1366 확대 설치, 통합적(의료, 상담, 법률, 보호시설 등) 위기개입 서비스 강화(윈스톱서비스센터) 등이 진행되었다(국정홍보처, 2008). 또한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개정되어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나아가 2009년에는 저출산 극복 및 양성평등출산문화 정착과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는 등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국정홍보처, 2008)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마지플랜 2010’, ‘새싹플랜-중장기 보육계획’ 등이 시행되었다(노무현 정부 국정운영백서, 2019).

다음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삼은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시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1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가족간호휴가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실시되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중소기업 내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및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위한 「고령자고용

촉진법」 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직제 의무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3).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는데, 시설 입소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생계·교육·양육 등을 위한 비용 지원과 통합적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의 내용이 보다 강화되었다(윤덕경, 2017).

이후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5월)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과 저출산 극복 및 여성 경제활동 확대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건강한 성장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며,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가정폭력을 사회의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보라데이 캠페인, 가정폭력 추방 주간 등과 같은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확대하였다(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2013).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아빠의 달’ 3개월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의 확대, ‘전환형 패키지 제도’ 확산 등 ‘일·가정 양립’분야와 관련한 제도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

끝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2017년 5월~현재)는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삼고 휴식 있는 삶의 보장을 위한 다양한 가족관련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15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의 심화와 노인빈곤율도 OECD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출산 장려의 정책 방향을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수정하여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그 예로,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10 to 4 더불어 돌봄’, 질병·사고·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도’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 및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확대 등이 실시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퇴소 시 주거 및 생활비와 같은 자립지원금을 지원하여 그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나아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의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경기·인천·경북·전남 지역에 양성평등센터가 설치되어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였다(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2019).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회 변화와 함께 발생한 기능적인 변화와 다양한 요구 등에 대응하면서 가족의 의미와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과정 중에 가족정책의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족정책은 분절화라는 문제부터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가족정책의 정체성을 재평가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점에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과정

본 연구는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의 기반 구축과 연구확산 고도화를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비롯하여 법령 탐색, 전문가 콜로키움, 전문가 온라인 서면조사, 전문가 감수 등 다양한 접근이 병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먼저 가족사업과 관련하여 가족사업의 수행주체 중 민간기관은 배제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정부 부처로 국한하여 공적 가족사업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시기별 주요 가족사업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정운영백서를 중심으로 정부별 가족사업 관련 추진성과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를 구현함에 있어 가족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족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연계된 가족사업들을 도출하였다. 즉,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부처별 진행사업의 수혜대상이 ‘가족’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을 검색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근거로 2019년 현행 법령(2019년 10월 기준) 중 가족사업의 주관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를 기준으로 307개의 법령을 추출하였다. 이후 해당 법령을 가족정책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용어가 제1조(목적) 또는 기타 조항에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가족’ 또는 ‘가정’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법령이 가족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43개의 법령을 선정하였다. 다음 가족학 분야와 아카이브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연구책임자가 재직 중인 대학 내 회의실에서 총 2회 전문가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각 회기의 소요시간은 약 12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우선 본 연구의 개요에 대하여 사전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메일로 발송한 후,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후 이를 토대로 연구 진행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각 회기에는 연구진 이외에도 가족정책 전달체계기관의 관계자가 배석하여 연구내용 및 방향의 부합성을 진단받았다. 이어 전문가 온라인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 기 선정된 법령에 대한 가족사업 근거 법령으로서의 타당성 및 충분성 등을 평가하였고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과정을 거친 법령들을 현행

〈표 1〉 대한민국 가족사업의 근거가 된 법령

순번	법령	순번	법령
1	민법(친족편, 상속편·일명 가족법)	14	한부모가족지원법 (구: 모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
2	노인복지법	1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3	청소년기본법	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구: 남녀고용평등법)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다문화가족지원법
6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19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구: 생활보호법)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	청소년복지지원법	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건강가정기본법	22	아이돌봄지원법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4	양성평등기본법 (구: 여성발전기본법)
12	긴급복지지원법	2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6	아동수당법

법령 기준으로 통합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총 26개의 법(령)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온라인 서면조사는 주요 가족 관련 법령 선정 및 연계된 공적 가족 사업들을 도출함에 있어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조사 문항은 가족사업의 개념,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 시 필요한 사항, 가족사업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우선순위, 해방 후 한국 가족사업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요인, 가족사업 아카이브와 관련한 자유 의견 등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가족학·가족복지학·가정정책학·가정경영학·가족사회학·아동

학·법여성학 등 관련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경력 15년부터 30년에 이르는 학계 및 현장실무를 담당하는 동종계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표 2〉 참조). 끝으로, 법(령)에 기반한 공적 가족사업의 3가지 아젠다 범주화 및 우선 사업 선정 등 본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 동안 본 연구에 개입하지 않았던 가족정책, 법여성학, 아카이브학 전문가 총 3인과 가족정책 전달체계기관 관계자의 감수를 받았다.

〈표 2〉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

전문가	소속	직위	전공	학력	전문가	소속	직위	전공	학력
A	대학교	교수	가족학	박사	F	대학교	교수	가족사회학	박사
B	센터	센터장	가족복지학	박사	G	대학교	교수	가족정책학	박사
C	대학교	교수	가족학	박사	H	대학교	교수	가족학	박사
D	대학교	교수	가족정책학	박사	I	대학교	교수	아동학	박사
E	대학교	교수	가정경영학	박사	J	연구소	교수	법여성학	박사

2. 공적 가족사업의 연혁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가족의 존립과 행복을 위해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적 가족사업들을 전개해 왔다. 그간의 사업들 중 아카이브화 구축에 필요한 내용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온라인 서면 조사를 토대로 공적 가족사업들의 기반이 된 법(령)들 간의 가중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친족법, 상속법·일명 가족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순으로 상위 10개 법(령)이 선정되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선정된 법(령) 중, 가족정책 대상으로서의 가족 및 가족생활의 범위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친족법, 상속법·일명 가족법)」을 제외하고 그 외 각 법(령)들을 기반으로 도출된 대표적인 공적 가족관련 사업들을 연대별로 탐색한 결과 다음의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연대별 공적 가족관련 사업 주요 연혁

2000년 이전	1976년	• 「입양특례법」 제정
	1987년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9년	• 「모자복지법」 제정
	1995년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996년	• 여성주간 실시
	1997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대	1998년	• 가정복지사 배출 • 육아휴직 제도 도입 •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정책과제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2001년	• 육아휴직 급여 도입
	2002년	• 「모·부자복지법」으로 법제명의 개정
	2003년	•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지원 시작
	2004년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건강가정지원센터(3개소) 시범사업 실시
	2005년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기념한 ‘가족의 날 기념 건강가정 대토론회’ 실시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실시
	2006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제1차 가족실태조사 실시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함께가는가족 2010> 발표 •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마련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발표
	2007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제명의 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대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 대표전화(1577-9337) 개통 • 아이돌봄지원사업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행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자화 시책 시행 • 민관합동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공식 출범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지원 운영 시작 •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부여 • 제1차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실시
2010년대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가족실태조사 실시 • 'Family day'를 '가족사랑의 날'로 변경 •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수립 • 보호시설 입소자에게 생계비·교육지원비·양육비 등 지원 근거 마련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수립 • (재)한국건강진흥원 개원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에 의한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 다누리콜센터(1577-5432) 설치 및 운영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실시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수립 • 「아이돌봄지원법」 제정 • 제2차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 실시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드림(아동, 여성, 장애인에 대한 경찰지원센터) 마련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영역 개편 • 가정폭력 추방공간 신설을 통한 가정폭력 관련 인식 개선 • 제2차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실시 • 양육이행관리원 설치 • 제3차 가족실태조사 실시 • 제3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실태조사 실시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발표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본격 실시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1577-5432)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치·운영 위탁 기관 선정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중 성평등과 인권 영역을 성평등·인권 영역으로 통합 • 가족친화지수(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실시 • 제4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실시 • 한부모가족의 날(5.10) 제정 • 한부모가족상담전화센터(1644-6621) • 제3차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실시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성장지원 커뮤니티센터 개소(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 세상모든가족 캠페인 실시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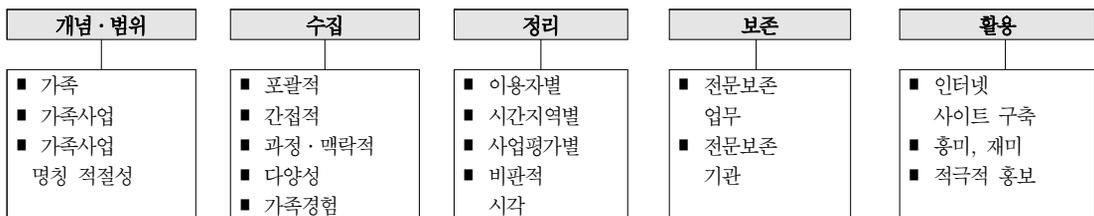
1.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의 범주화 및 쟁점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주요 쟁점들은 앞서 제시한 전문가 대상 온라인 서면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주관식 서술형으로 자문한 내용을 Miller(1990)가 아카이브 구축 시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5단계 프로세스에 근거하여 해당 과정별 주요 내용을 키워드화 하였다. 즉, 아카이브 구축 시 업무적·기능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공적 가족사업의 개념과 범위 설정 및 아카이브의 수집·정리·보존·활용 과정에서 유의하거나 고려할 사항들에 대하여 총 5가지 쟁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개념·범위에 있어서의 쟁점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조사라는 점에서 가족, 가족사업 등과 같은 주요 개념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가족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가정사업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전문가 I)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카이브의 이름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가족’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전문가 B), ‘1인 가구’나 ‘유사가족’ 같은 정서적 공동체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확장된 개념’으로서 가족을 정의(전문가 F)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가족사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가족사업의 범위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정의 건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전문가 A)하는 사업은 협의이고, 광의로 볼 경우 ‘명시적인 가족제도나 정책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정책이나 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전문가 C). 가족사업의 주체를 정부 주도의 ‘공공정책으로 한정할 것인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전문가 G), 즉 다양한 가족 관련 서비스·프로그램·사회운동을 포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가족사업이라는 이름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은 정책이나 사업을 포함할 것인지(예를 들어,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 포함 여부(전문가 E)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가족사업이라는 명칭이 갖는 모호성을 지적하며 ‘가족사업’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형태의 어감이 존재하는데,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지 않는 제도나 법률의 포함’이 필요할 수 있고(전문가 D), ‘가족사업이라는 용어가 구체성이나 명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전문가 H) 보다 직관적인 표현으로 ‘가족정책사업’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할 것인가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다양하고 포괄적인 자료 수집의 범위를 제안하였다. 먼저 가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나 부처가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전달체계 수준에서 시대별로 명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사업이라는 범주 안에서



<그림 2>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 시 고려할 쟁점

다루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어도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전문가 E). 또한 가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고 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전문가 C). 그리고 인구정책이나 출산장려정책은 가족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으므로 ‘출산관련정책의 흐름과 가족사업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 E). ‘가족사업의 결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사업 구상과정이나 맥락에 대한 내용도 함께’ 수집해야 하며(전문가 C), 특히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던 2000년대 전후(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시기)의 사회적 흐름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찬반 논의 과정, 해당 정책의 강점이나 한계점과 관련한 논의 등 ‘그 과정의 기록이 생생하게’ 남을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전문가 D). 더불어 자료원과 관련해서 ‘인쇄물로 남아있는 기록 자료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분들의 육성 자료도 함께 기록하는 등(전문가 C), 가족사업 관련한 정책 입안자, 학자, 공무원, 현장 실무자, 실천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구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전문가 D). 그리고 역사적 사건과 상황에 대한 사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 I). 또한 ‘가족사업을 진행한 정부의 역사가 아니라 가족사업을 경험한 가족들의 변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전문가 A).

셋째, 아카이브 정리 과정에서의 쟁점과 관련하여 이용자별 요구에 맞는 자료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리 분류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이용자를 구분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는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우선 가족정책이나 가족사업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아카이브에서는 ‘가족정책의 이해 파트와 가족정책 추진 체계 파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 경과 등을 한

에 볼 수 있는 파트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전문가 B), 사업의 제안에서부터 폐기 혹은 수행된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전문가 G).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기록관이나 전시장소보다는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전문가 G). 일반인 대상으로는 아카이브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실제로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과 경험담(수기)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바로 당신이 가족사업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을 분류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전문가 A).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콘텐츠별 영상(부모되기/아버지교육 등)’을 제공하여 일반인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전문가 B). 한편 가족사업 아카이브 관련 자료의 정리 분류 기준으로는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을 구상하고 마련해서 추진 과정, 사업이 구현되는 양상과 전달체계를 통해 운영된 경험에 이르기까지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전문가 E) ‘연대별로, 지역별로’(전문가 I)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사업이 ‘한국 가족의 실태에 기반하기보다는 해외 사례에 의존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가족사업을 객관적으로 잘 평가한 연구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평가에 따른 분류를 통해 ‘근거중심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아카이브 구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하였다(전문가 C). 또한 ‘가족사업 역사가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역할이 규정’되어 온 측면이 있으므로 ‘가족 신화(myth)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카이브가 제시될 수 있도록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여 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전문가 F).

넷째,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사업 아카이브 별도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 관련 담당 주무부처가 변경되

었고, 대상별로 담당 부처가 중첩되거나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특정 기관이나 부처에서 아카이빙을 담당하여 관리를 전담할 때 자료의 수집이나 분류에 있어서 편향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사업의 역사와 자료를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전문가 B).

다섯째, 아카이브의 사용자 집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일반인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카이빙, 방송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관련 법령, 정책, 사업, 운영 및 이용자 경험 등 가족이나 가족사업과 관련된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검색의 출발점이자 자료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를 재구성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전문가 I). 수집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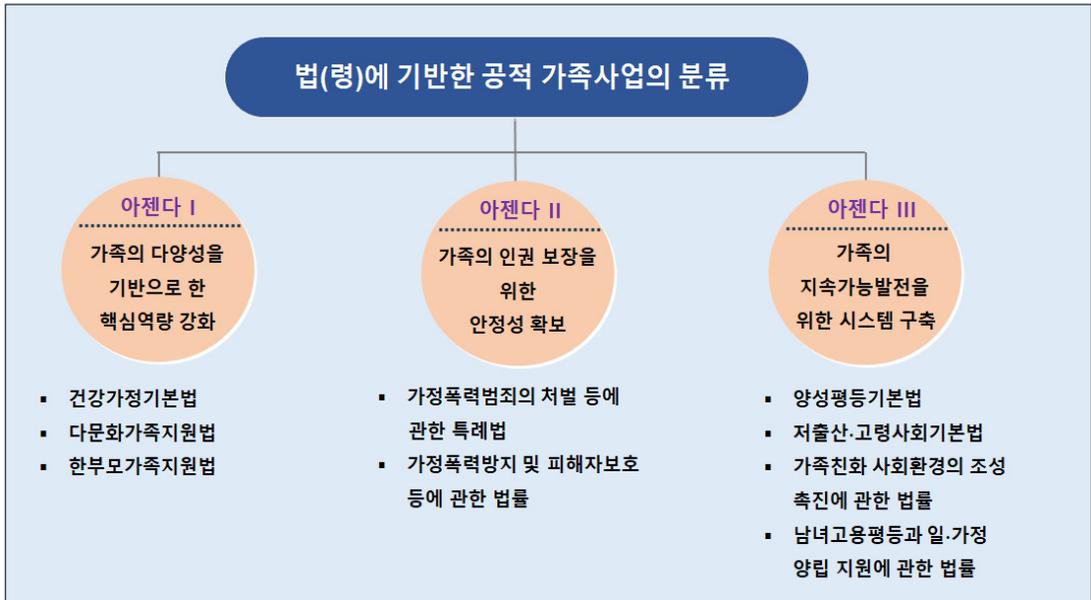
구축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 G). 또한 오프라인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제시할 때 젊은 세대나 일반인들에게 흥미롭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전문가 F). 그리고 '방송매체 등을 통한 대대적 홍보를 통해 자료 구축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 공적 가족사업의 주요 내용

현재까지 축적된 다양한 가족사업들을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분류한 결과,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3가지 아젠다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아젠다 I: 가족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핵심역량 강화

아젠다 I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토대로 전개되는 공적 가족사업들을 의미한다.



<그림 3> 법(령)에 기반한 공적 가족사업의 분류

우선 「건강가정기본법」에 기반한 가족사업 서비스의 전달기구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3개의 시범센터에서 출발하여, 점차 다문화와 비다문화 가정을 구분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가족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통합센터로 운영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78개에서 시작했던 통합센터는 2020년 현재 183개소(건강가정지원센터 2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4개소)로 증가하였다(2020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평가단 워크숍 자료집, 2020). 자녀돌봄의 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아이돌봄비’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출발한 주요 사업이다. 2007년에 전국 38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였던 아이돌봄비 사업은 2009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고, 2010년부터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2011년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정 이후 보다 세부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진 건강가정 사업으로는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특히 가정 내 남성들이 돌봄의 공동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사업과 문화 사업에 적극적 노력을 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2019; 여성가족부, 2019a, 2019b; 이현아, 2018).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립은 2006년 대통령 자문위원회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발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8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칭·확대하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강복정, 2012; 김영숙·우정한, 2012). 특히 최근 전달체계 상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주장되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지향(박복순 외, 2016)한다는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

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보다 통합된 다양한 관련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a; 2019b; 2019c; 2019e).

끝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복지급여사업에서 시작되어 한부모가족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부모가족복지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증명을 받아 신청하고 그에 따라 확인 후 지원한다. 그 외의 사업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그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 그리고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미혼모 부초기지원사업과 가족역량강화사업 등의 거점을 맡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2019년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공모·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젠다 I에 해당하는 각 법(령)에 의거한 대표적인 주요 가족사업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2) 아젠다 II: 가족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정성 확보

‘가족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정성 확보’의 범주인 아젠다 II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전개되는 공적 가족사업들을 포함시켰다.

우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23차례의 개정 과정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건강한 가정 육성이라는 목적 이외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의 목적이 추가되었고, 가정폭력 유형도 성범죄가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내용은 확대되어 왔다(박복순, 2018; 정현미, 2017). 「가정

〈표 4〉 ‘가족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 가족사업

「건강가정기본법」	• 부모교육 •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 가족(집단)상담	• 워킹맘·대디 지원 • 남성대상 교육 • 공동육아나눔터	• 모두가족봉사단 • 취약·위기가족지원 • 아이돌봄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 이주언어 가족환경조성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미혼모부 초기지원 • 양육비 이행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가족역량강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 1644-6621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주요 가족 사업은 제도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응급조치·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주요 사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담소·보호시설·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의 시설 설치가 꾸준히 확대되었고, 특히 이주여성, 장애인 등 가정폭력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이념이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에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피해자 지원의 내용이 확대·강화되었다. 또한 사회적인 예방 조치로서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추방주간, 가정폭력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윤덕경, 2017). 아젠다 II에 해당하는 두 개의 법(령)에 의거한 대표적인 주요 가족사업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3) 아젠다 III: 가족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아젠다 III은 「양성평등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전개되는 공적 가족사업들을 의미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가족사업을 살펴보면, 일상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캠페인, 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하는 양성평등주

〈표 5〉 ‘가족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적 가족사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응급조치 • 보호처분	• 임시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상담소 서비스 •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 설치 및 종사자 교육 • 안전드림	• 보호시설 서비스 • 가정폭력실태조사 • 1366 긴급전화센터 • 보라데이 캠페인	• 피해자 및 가족의 치료보호프로그램 • 가정폭력예방교육 •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 가정폭력추방주간

간(매년 7월 첫째 주)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5년 주기로 양성평등에 관한 국민 인식,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양성평등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한 관련 공적 가족사업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정책 교육, 전문강사 양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젠더기반 폭력에 방교육사업, 양성평등진흥사업(양성평등미디어상 운영,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양성평등학교 운영 지원, 양성평등학교 운영지원), 여성역량강화 사업(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여성인재풀 관리), 네트워크 사업(포럼 본 운영,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국제개발협력 사업, 폭력예방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양산시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를 개소하는 등 해당 지역의 현실과 요구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기반한 공적 가족사업은 2019년에 수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기점으로 관련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저출산 극복에 집중된 기존사업을 정비하여 추진 사업분야를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19). 구체적으로 청년세대의 일자리 및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임신·출산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산전 진찰 등 의료비 지원, 자녀양육 지원방안으로서의 돌봄여건 확충 및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다함께 돌봄사업,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을 위한 노인돌봄(돌봄)서비스, 신중년 노후준비 및 특화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한편, 과거 법정제도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분위기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제 도입은 일 중심에서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균형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강민정, 2019).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1년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컨설팅, 가족친화컨설턴트 및 직장교육 전문가 양성,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 운영 등의 가족친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뿐 아니라 정시퇴근하여 가족공유시간 확대를 통한 한국 사회의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실천을 위하여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친화경영 실천 기업들과 협력하여 2009년 10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패밀리 데이(Family day)로 운영하던 것을 2010년 12월부터는 ‘가족사랑의 날’로 변경하고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적 가족사업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인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지원, 육아·돌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지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전국의 158개소(2019년 9월 기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사업,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구직대상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디딤돌 취업지원(알파우먼 스쿨)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젠다 III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주요 가족사업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가족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적 가족사업

「양성평등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주간 • 전문강사양성과정 • 양성평등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실태조사 • 젠더기반 폭력예방교육 •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정책 교육 • 네트워크 및 여성역량 강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운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 다함께 돌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 노인 장기요양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노인돌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 산전 진찰 등 의료비 지원 •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 신중년 특화서비스 • 저출산·고령화 포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 가족사랑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 인증 컨설팅 •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의회 • 가족친화 직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 가족친화 컨설턴트 및 가족친화 직장 교육 전문강사 양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휴직제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 디딤돌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출산휴가·육아지원 •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 구직여성을 위한 인턴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지원 • 육아·돌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지원 • 구직여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정생활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근거가 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15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 공적 가족사업의 역사를 분석하고 아카이브의 과정별 요소를 탐색함으로써 가족정책 분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근거로 현행 법령(2019년 10월 기준) 중 정부 부처의 공적 가족사업의 근거인 법령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 및 온·오프라인 상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전문가 활용을 통해 연구내용과 방향에 대한 부합성 진단, 가족사업 근거 법령의 우선순위 조사, 아카이브의 과정별 요소에 대한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적 가족사업 변화과정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통합적 분류를 통한 공적 가족사업을 3가지로 범주화하여 해당 자료를 재구조화하였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들이 개념·범위, 수집, 정리, 보존, 활용이라는 5가지 영역에서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조사라는 점에서 가족, 가족사업 등과 같은 주요 개념들에 대한 범위와 개념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자료 수집, 다양한 정리 분류 기준을 활용한 이용자별 요구에 맞는 자료 정리,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가족사업 아카이브 별도 전문기관의 필요성,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적극적 홍보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였다.

둘째, 공적 가족사업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산출된 3가지 아젠다별 사업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젠다 1인 '가족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핵심역량 강화' 범주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토대로 전개되는 공적 가족사업들이 포함된다. 이 중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하여 부모교육, 워킹맘·대디 지원, 모두가족봉사단,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아이돌봄 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등의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해서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

키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의 사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기반하여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미혼모부 초기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등의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음을 추출하였다. 다음 아젠다 II인 ‘가족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정성 확보’ 범주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전개되는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가정폭력상담소 서비스, 보호시설 서비스, 1366 긴급전화센터,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가정폭력추방구간 등의 사업을 도출할 수 있었다. 끝으로 아젠다 III인 ‘가족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범주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전개되는 공적 가족사업들을 의미한다. 즉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실태조사, 젠더기반 폭력예방교육, 성인지정책 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젠더기반 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기반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산전·진찰 등 의료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다함께 돌봄사업, 노인 장기요양, 노인돌봄 서비스,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저출산·고령화 포럼 등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친화 경영 실천포럼 등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관련 주요 가족사업으로는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지원, 육아·돌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지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 등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적 가족사업 범주의 아젠다화는 공적 가족사업의 현황을 토대로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가족사업의 내실 있는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가족사업 관련 종사자에게는 가족사업에 대한 역사적 사건과 경험을 담고 있는 보존처로서, 동종계열 학문연구자에게는 학술활동에 유익한 연구자료의 지식창고로서, 국민에게는 공적 가족사업에 관한 발자취를 생생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공자원으로서의 공적 가족사업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적 가족사업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별도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는 체계적인 자료수집방식 및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설계를 통해 실현가능하다. 공적 가족사업의 역사를 기록하는 도구로서의 아카이브 구축은 단순히 자료수집만을 통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적 가족사업 자료의 등록에서부터 조사·연구·수집·관리·보존·활용 등 자료관리의 전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 등이 요구된다. 또한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부터 해당 자료의 저작권 문제, 데이터베이스(DB)화 방안, 자료 제공에 대한 표준화 방안 등에 관하여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수집자료에 대한 가치평가도 면밀히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집자료의 형태에 있어서도 종이를 매체로 하는 텍스트 위주의 기록물, 사진과 같은 이미지 형태의 기록물, 음향과 영상 등을 담고 있는 시청각 형태 기록물 등 생생한 가족사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무형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수집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포괄성이 확보된 자료들은 공적 가족사업의 역사를 축적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아카이브 이용자의 관심과 만족을 유도하는 긍정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아카이브 구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충

괄하며 추진할 수 있는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사회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는 공적 가족사업의 내실 있는 도약을 위하여 가정학계는 관련 법령 제정 및 이슈별 추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방향성 제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적 가족사업 아카이브를 구현하기 위해 가족자원경영학을 포함한 가정학의 관점에서 공적 가족사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면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가족자원경영학은 가족의 욕구 충족을 통한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족자원관리와 관련된 이슈를 다룰 뿐 아니라 잠재력을 지닌 사회자본으로서 가족자원의 가치를 입증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자원경영학은 변화하는 가족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이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가족사업과 커다란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가족자원경영학의 고유성은 잃지 않되 이와 같이 타분야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분석되는 연구들을 통한 학문적 외현 확대가 필요함이 지적된 바 있다(이연숙 외, 2009). 이와 같이 공적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구축은 가정학이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을 보존함과 동시에 가정학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실천학문인 가정학과 가족사업 방향의 미래 로드맵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가족사업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로 다루지 못하였으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가족사업 모두를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아젠다화를 시도하는 공적 가족사업의 구조화 측면에서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음을 열어 놓고자 한다. Ham(1993)은 기록의 선별과 평가는 아키비스트(archivist)의 지적인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자 직접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영역임에도 분류와 기술 과정에서 개인의 편견을 배제하는 부단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진 또한 이러한

측면에 기대어 공적가족사업의 선별과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독자들의 견해는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가정생활의 실제와 이슈를 반영하는 법령을 확대하여 포함하고, 관련 연혁들의 선정과 아젠다 명명화 과정 시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연구자뿐 아니라 가족정책 전달체계기관 및 지역의 가족정책 공공-민간 전달체계 관계자 등을 자문진으로 구성하여 지역 단위의 가족관련 사업의 내용을 고도화·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타당하고 체계적으로 관련 정보가 수집·관리되어 공적 가족사업 아카이브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가족사업의 집적된 역사적 성과를 통시적으로 축적하고 궁극적으로 가정학의 외현 확대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관계부처합동(2020).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 (2016~2020) 2020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3) 국정홍보처(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④ 사회. 서울: 국정홍보처.
- 4) 강민정(2019). 가족친화인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안). 2019 KWDI 이슈페이퍼 10월호.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5) 강복정(2012).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분석. 다문화사회연구, 5(1), 143-190.
- 6) 김영숙·우정환(2012).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다문화 콘텐츠연구, 13, 69-103.

- 7) 김영옥 · 김이선 · 황정미 · 황정임 · 마경희 (2006).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서울: 여성가족부.
- 8) 김유승 · 류반디(2015).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73-194.
- 9) 김윤영 · 안병현(2012). 김백봉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7, 19-46.
- 10) 김익한 · 권소현(2010).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173-214.
- 11) 김정하(2007). 기록물관리학 개론. 파주: 아카넷.
- 12) 김혜경 · 도미향 · 문혜숙 · 박충선 · 손홍숙 · 오정옥 · 홍달아기(2014). 가족복지론. 경기: 공동체.
- 13) 김화경(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 14) 대통령비서실(1998). 김영삼 문민정부 국정 5년, 변화와 개혁, 그 도전과 시련. 서울: 대통령비서실.
- 15) 대한민국정부(2013).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07, 08, 09, 10권. 서울: 대한민국정부.
- 16) 박복순(2018).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여성연구, 99(4), 181-218.
- 17) 방민석(2016). 국정과제의 설정, 변화와 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4), 27-57.
- 18) 백영주 · 김수자(2005).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현황과 관리방안: 해방이후~1980년대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5-21.
- 19) 보건복지가족부(2008).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보완관 함께 가는 가족2010.
- 20) 서은경 · 박희진(2019). 기록콘텐츠 기반의 아카이브 전시 활성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69-93.
- 21) 설문원(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22) 신동희 · 김유승(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0), 1-30.
- 23) 양애경(2012).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II): 여성정책 2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4) 여성가족부(2019a). 2019년 가족사업안내(I).
- 25) 여성가족부(2019b). 2019년 가족사업안내(II).
- 26) 여성가족부(2019c). 2019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27) 여성가족부(2019d).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28) 여성가족부(2019e). 2019년도 시행계획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29) 오정희 · 정연경(2015).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90-125.
- 30) 유범상(2012). 전환기의 사회정책과 가족: 정치적 상상력으로 조망한 가족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3-27.
- 31) 윤덕경(20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과제. 젠더리뷰, 44, 4-11.
- 32) 윤홍식 · 류연규 · 송다영 · 신경아 · 윤성호 · 이숙진 · 안세아(2011). 국내의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3) 이기영 · 문숙재 · 송혜림(1996). 공공가정경영론. 서울: 학지사.
- 34) 이연숙 · 한지수 · 한영선 · 김하늬(2009).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의 경향 및 발전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207-226.
- 35) 이정우 · 지금수 · 이정숙 · 최동숙 · 최덕경 · 계선자 · 김경숙 · 박미석 · 이명숙(1997). (최신)가정경영학. 서울: 수화사.
- 36) 이진숙(2017).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포럼, 252, 78-91.

- 37) 이진숙·안은숙(2006). 가족복지정책의 발전 과정 속에 나타난 쟁점들과 대응. 사회복지연구, 30, 5-38.
- 38) 이현아(201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현황 및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3), 61-76.
- 39) 이혜린·박주석(2020). 1970년대 여성 노동자 아카이빙 방법론 연구: 전시 〈Women & Work: A Document on the Division of Labour in Industry〉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3, 145-165.
- 40) 이희재(2004).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231-249.
- 41) 장명옥(1982). 가정학원론. 서울: 교문사.
- 4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43) 정영금(2017). 일상의 학문, 가족자원경영학의 연구경향과 미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3), 61-75.
- 44) 정지연(2019).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인문과학연구, 62, 29-53.
- 45) 정현미(20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과와 과제. 젠더리뷰, 12-20.
- 46)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47) 조희금·고선강·박정윤·성미애·송혜림·이승미·이현아·장진경·정민자(2014). 건강가정기본법 백서. 서울: 대한가정학회.
- 48) 천호준·김주학(2008). 스포츠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체육학연구, 19(3), 140-151.
- 49) 최장락·이상희(2013). 대전지역 아카이빙 자료의 근대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 디지털융복합연구, 11(7), 1-7.
- 50) 최정태·이애란·이영숙(2006). 기록학개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 51)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2020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평가단 워크숍 자료집.
- 52) 한국기록학회(2008).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53) De Haan, F.(2004). A "Truly International" Archive for the Women's Movement (IAV, now IIAV): from its foundation in Amsterdam in 1935 to the return of its looted archives in 2003. Journal of Women's History, 16(4), 148-172.
- 54) Ham, F. G.(1993).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55) Iacovino, L. (2010). Rethinking archival, ethical and legal frameworks for records of Indigenous Australian communities: A participant relationship mode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chival Science, 10(4), 353-372.
- 56) Miller, F. M.(1990).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57) Pearce-Moses, R.(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Chicago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58) 강원아카이브(2020). <https://archivemodoo.modoo.at/>
- 5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6.2.18). ‘임신기 단축 + 출산휴가, 육아휴직 +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방식 활용 제도 도입 제 1호 기업 탄생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6410
- 60)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2019). <https://www.familynet.or.kr/index.jsp>
- 61)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http://www.law.go.kr>
- 62)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백서(사회)(2019). <http://president.rohmoohyun.pa.go.kr>
- 63) 성평등아카이브(2020). <http://www.genderarchive.or.kr/>

64)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2019). 문재인 정부 2년, 내 삶을 바꾼 2년 - 여성정책 편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540102901>

65)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2019). <https://www.ica.org/en/what-archive>

- 투 고 일 : 2020년 06월 15일
- 심 사 일 : 2020년 07월 10일
- 게재 확정일 : 2020년 08월 18일